

보도시점 : 2024. 3. 21.(목) 11:00 이후(3. 22.(금) 조간) / 배포 : 2024. 3. 21.(목)

건설현장 불법행위, 지나치지 말고 신고하세요

- 22일부터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
- '23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(5.23~8.30) 이후 835개 현장 단속, 276건 적발 조치 중
 - 국토부-지자체 합동단속 지속 실시 예정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**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**를 위해 「공정 건설지원센터*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」(국토교통부 훈령)을 개정하고 **3월 22일부터 시행**한다고 밝혔다.

* 서울·원주·대전·익산·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·운영 중('21.9~)이며, 신고자가 건설 공사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법령위반 여부를 검토·조사 후 처분기관에 처분 요청

○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**자발적 참여** 분위기를 조성하고, **포상금 제도를 활성화**하고자 마련되었다.

○ 주요 개정내용은 **포상금 지급 한도**가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**상향**한다. 또한,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**개선***하고, 건설근로자의 채용 강요,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한 청탁 등 **노사 불문**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한다.

* (기존) 신고 내용에 대해 행정처분·형사처벌 완료 후 포상금 지급 → (개선) 처분·처벌 완료되지 않더라도 지방국토관리청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포상금 지급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「**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**」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**캠페인**을 실시한다.

○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신청 방법이 함께 **안내**될 예정이며,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(☎ 1577-8221, 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)를 직접 방문하거나, 국토교통부 누리집, 우편 또는 **팩스**로도 접수*가 가능하다.

* 우편, 누리집 신고 시 「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」 별지 서식의 신고서 작성 필요(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-법령정보-행정규칙에서 확인 가능)

- 한편, 국토교통부는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,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상시단속을 실시 중으로,
 - 지난 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건설현장을 단속해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으며,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.
-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“건설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”이라며, “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,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”고 하면서,
 - “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기한없는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건설정책국 공정건설지원팀	책임자	팀 장	조숙현 (044-201-3518)
		담당자	사무관	김종현 (044-201-3572)
			주무관	이주원 (044-201-3509)



참고 1

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활성화 개요

□ 제도 개요

-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지방국토청에 '공정건설지원센터*'를 설치('21.9~)하고, 신고포상금 제도** 운영('23~)

*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 : 건설기술진흥법 제22조의3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

** 건설현장 불법행위 포상금 운영 :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8조의4

□ 주요 개정내용

- (금액) 신고포상금 지급 최고액은 건당 50만원이었으나, 법령에서 정한 최고 지급액인 200만원 한도까지 4배 증액
- (절차) 처분완료 이후 지급이 가능했지만, 처분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급 할 수 있는 절차 신설
- (대상) 불법하도급·대금미지급 외에 채용강요·건설기계 임대 관련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 기준 신설
- (안내) 신고자에게 해당 처분결과와 포상금 신청 안내를 동시에 알릴수 있도록 행정안내(유선, 이메일, 공문 등) 절차 신설

□ 신청 방법

-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, 국토교통부 누리집,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 가능, 대표번호(☎ 1577-8221, 해당 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)로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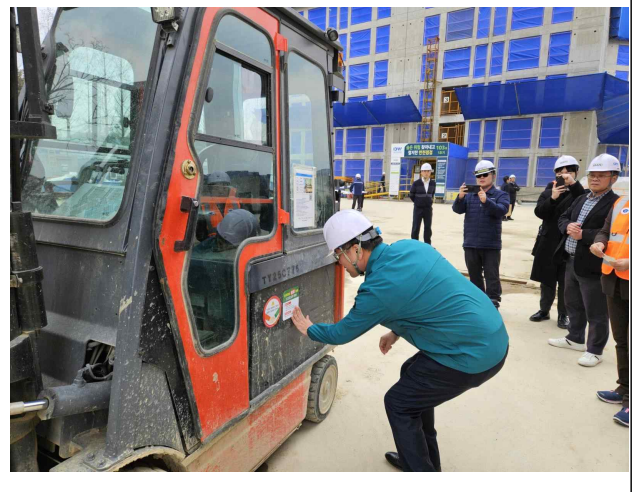
접수기관	신고지역	우편주소	FAX
서울지방국토관리청	수도권	(우)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(중앙동) 정부과천청사 2동	02-2110-0683
원주지방국토관리청	강원권	(우)2646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50(반곡동 1858-5)	033-742-9590
대전지방국토관리청	충청권	(우)34546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(용전동 173-1)	042-670-3482
익산지방국토관리청	전라·제주	(우)54619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27(남중동)	063-850-9453
부산지방국토관리청	경상권	(우)48814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67(초량동)	051-660-1042

* 국토교통부 누리집 : www.molit.go.kr

참고 2

신고포상금 활성화 홍보 캠페인 사진

□ 홍보 캠페인



참고 3

신고포상금 활성화 홍보물

□ **홍보스티커**



□ **홍보포스터, 현수막**



참고 4

‘23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(‘23.5.23~8.30) 이후 단속 현황

□ (기간) ‘23. 9. 1 ~ ‘24. 2. 29 (6개월)

□ (단속현장) 835개 □ (적발현장) 150개 □ (적발건수) 276건

< ‘23.9월~‘24.2월 불법하도급 단속 현황 >

구분	기관별	단속	적발 현장	위반건수
합계		835	150	276
국토교통부	소계	369	135	259
	서울지방국토관리청	108	54	124
	원주지방국토관리청	20	8	16
	대전지방국토관리청	74	27	39
	익산지방국토관리청	50	21	35
	부산지방국토관리청	117	25	45
	지자체	소계	432	13
서울특별시		5	-	-
부산광역시		37	-	-
대구광역시		26	1	1
인천광역시		14	-	-
광주광역시		5	-	-
대전광역시		1	-	-
울산광역시		40	2	4
세종특별자치시		7	-	-
경기도		39	3	3
강원특별자치도		21	1	1
충청북도		3	-	-
충청남도		78	1	1
전북특별자치도		12	-	-
전라남도		15	-	-
경상북도		64	-	-
경상남도		53	5	5
제주특별자치도		12	-	-
공공 기관 등		34	2	2

* 지자체 단속실적이 낮은 수준으로, 단속 역량 제고를 위해 단속공무원 집합교육 실시 중